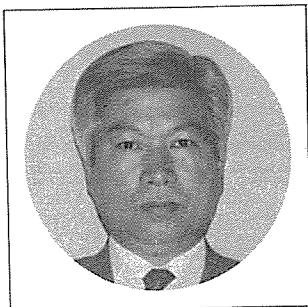


情報化 사회와 컴퓨터犯罪



金吉助

〈中央大教授, 韓國情報시스템監查人協會會長〉

◇ 정보화 사회의 진전

21세기를 향한 우리 韓國을 情報化社會의 진입이 가까워진 나라라고 칭한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外國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울러 외국의 文物이 쏙아져 들어 온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지만, 올림픽경기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대한 경험이 情報化社會를 앞당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社會의 각 분야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惡用하는 犯罪가 뒤따르게 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겠다.

◇ 컴퓨터 범죄의 등장

오늘날 세계의 各地에서 컴퓨터에 연관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1960년대에 이미 그始發을 찾아 볼 수가 있었고, 컴퓨터의 조작기술, 원격 단말기(Terminal)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퍼스널컴퓨터 활용의 증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속한 발달등이 또한 컴퓨터범죄를 유

발하는데 큰 力을 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에 접근하기 쉽도록 이용자편의를 고려하다 보니, 컴퓨터 내부에 수록한 자료원을 쉽게 접근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도 다양해졌다.

예컨대, 은행에 예금해 둔 고객의 돈을 단말기를 은행원이 조작하여 자기명의 구좌로 예금주 예금액을 빼돌려 찾아 쓴 사건이라던가, 자동판매기에 넣어 둔 물품을 빼내어 훔치는 것처럼 컴퓨터 속에 넣어 둔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행위등도 컴퓨터범죄에 해당한다.

◇ 컴퓨터 범죄의 유형

컴퓨터 조작상의 범죄

• 절도죄 : 컴퓨터를 조작하여 타인의 예금구좌의 원장에 있는 잔액 중 일부를 빼내어 제3자의 口座에 옮겨 놓는 행위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정당한 경우는 電子資金自動代替處理시스템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 EFTS라고 약칭함)라는 일상적인 거래의 형태이다. 그러나 만약 예금주의 승락없이 은행원이 임의 또는 고

원시자료·펀치카드·프린트아웃등 이들의 매체에 不法變更을 했을 때는 文書變造罪로 처 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作成名義人과 기타 文書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文書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의로 예금액을 빼내어 제3자 또는 자기구좌에 옮겨 놓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財物의 개념과 관련시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否認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제3자 또는 자기의 구좌에 옮겨 논다음, 그 구좌에서 현금을 빼내었다면 마치 자동판매기에서 金品을 빼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

• 횡령죄：“委託關係에 있는 身分者로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신분관계가前提가 되어야만 하므로, 이러한 관계 이외의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은행의 프로그래머가 자기명의 구좌와 假名예금구좌를 개설하고 키보드를 조작하여 타인의 구좌 잔액에서 빼내어 他支店入金형식으로 2차에 걸쳐 入金增額시킨 뒤, 1,050만원을 不法引出하였던 사건은 행위의 주체가 포괄적 점유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로 기소한 사건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은행지점장, 예금담당대리 등이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詐欺罪：他人인 사람을 전제로 “欺罔行爲, 錯誤에 빠지는 행위, 피해자의 財產處分行爲”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범죄로 인한 財產利得行爲는 대부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컴퓨터작업진행과정에 사람이 개입되고 또 그 사람이 처분권을 가지고 처리했다면 그 사람을 欺罔함으로써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고 이로인해 재산처분행위를 가져와 부당이득을 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예컨대, 자기구좌에 일정액을 計上시키기 위해 펀치카드에 임의의 금액을 펀치하여 서명한 후, 그 천공된 카드를 펀치카드 업무담당자에게 넘

겨주고 형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조작함으로써, 자기 구좌에 일정액이 증액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였다(서독 뮌헨재판소에서 1976년 사기죄로 판결됨).

• 背任罪：他人의 사무를 처리하는 者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므로, 컴퓨터 운영이나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局外者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터미널이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내장된 돈이나 정보를 빼내어 이득을 취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직원이나 기업체의 고용원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부당한 이득을 보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에는 그 한계에 대하여 判例나 學說上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배임죄로 처리된다.

컴퓨터 데이터媒體에 의한 犯罪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기록, 보존과정에 사용되는 매체는 源泉資料, 펀치카드, 프린트된 文書와 磁氣的 또는 電子的으로 저장시킨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의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원시자료·펀치카드·프린트아웃등：이들의 매체에 不法變更을 했을 때는 文書變造罪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作成名義人과 기타 文書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文書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 자기테이프·디스크등：서독,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자기테이프나 디스크에 수록된 자료의 文書性을 否認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文書와 同様으로 취급하는 것이 多數學說이며 判例가 많다. 따라서 文書性을 인정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컴퓨터에 수록된 자기화 일을 변조하거나 자력을 이용하여 지워버렸을 때 데이터滅失

“프라이 버시” 保護문제：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西獨에서는 1976년 7월 9일 발효된 “聯邦데이터保護法”에 의해 “프라이 버시”를 보호해 주고 있다. 미국도 “프라이 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되어 있어, 이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依法 처리된다.

行爲와 관련하여 文書損壞罪보다는 財物損壞罪, 公用物件損壞罪로 처리하거나, 刑法 314條의 業務妨害罪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를 不法取得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자료의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프라이 버시” 保護문제：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西獨에서는 1976년 7월 9일 발효된 “聯邦데이터保護法”에 의해 “프라이 버시”를 보호해 주고 있다. 미국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되어 있어, 이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依法 처리된다.

• 企業 또는 경영상 비밀누설죄：기업정보에 관한 “스파이” 행위는 西獨은 “不正競争防止法”으로 보호되며, 各國에서는 刑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테이프·디스크 아웃·풀된 용지 등을 不法取得하는 경우에는 절도죄, 형령죄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自己소유의 테이프나 디스크로 데이터를 복사한 경우에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에 法的 未備點이 많다. 만약 프로그램등을 복사할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的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컴퓨터자원의 不正使用

외국에서는 使用窃盜罪를 罰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제한이 있고, 行爲者가 不正使用에 따른 不法利得을 처벌하는 정도이며, 사기죄, 배임죄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인 미비점이 많다.

現金引出機에 의한 범죄

은행의 지급수단을 現金引出機(Cash Dispencer : CD카드라 약칭함)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당

하게 CD카드의 자기스트라이트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가 많다.

• 現金引出行爲： 사람을 전제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CD카드 편취부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權利者의 승락없이 타인의 재물을 不法取得한 점에서 절도죄가 구성된다고 하겠다.

• 磁氣스트라이프 僞造行爲： 자기스트라이프에 관한 文書性 여부는 各國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文書의인 요건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변조된 자기스트라이프를 이용하여 현금을 빼내었다면 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컴퓨터범죄의 예방방안

컴퓨터에 연관된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예방방안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事前에 예방적인 조치가 더욱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컴퓨터시스템 監查제도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 : CISA라고 약칭함)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EDP 監查人協會(EDP Auditors Association : EDPA라고 약칭함)가 1969년 설립되었고, 한국지부가 1986년 11월에 한국정보시스템監查人協會로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本人의 7명의 한국인이 금년 8월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亞細亞 太平洋地域 EDPA 총회에 참석였으며, 국내에서도 금년부터 CISA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컴퓨터시스템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컴퓨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EDPA의 활동이나 CISA의 역할을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고 하겠으며, 조직의 책임자, 경영자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